

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8-제 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일자 : 2008. 2.

발 의 자: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일치와 법제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권고사항의 반영 및 국어맞춤법 등에 의한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법제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권고사항 반영

나. 「지방자치법」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치(안 제1조, 안 제9조)

나. 국어맞춤법 등에 의한 자구 등의 정비(안 제2조 내지 제4조, 안 제7조, 안 제8조, 안 제11조, 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붙임

나. 기 타

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” 를 “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 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,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” 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” 로 한다.

제2조 중 “3인이상 5인이하” 를 “3명 이상 5명 이하” 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출납폐쇄후” 를 “출납폐쇄 후” 로, “적정하다고” 를 “적절하다고” 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20일이내” 를 “20일 이내” 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지방공기업법 “을 “「지방공기업법」” 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” 을 “특별한 사유가 없으면” 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” 을 “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 84조제3항” 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검사시간중” 을 “검사기간 중” 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” 를 “「사천시의
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 <u>사천시결산감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</u>	제명 <u>사천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,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</u> 의 규정에 의한 결산심사위원(이하 “위원” 이라 한다)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위원의 정수) <u>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</u> 로 하되 이 경우 <u>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</u> .	제2조(위원의 정수) ----- <u>3명 이상 5명 이하</u> ----- -----.
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<u>위원의 선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이하 “예결위” 라 한다)에서 출납폐쇄후</u> 검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심사하여 <u>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촉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</u> . ② (생략)	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----- ----- ----- <u>출납 폐쇄 후</u> ----- ----- ----- <u>적절하다고</u>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위촉기간) ① (생략) ② <u>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</u> 로 한다. 다만, <u>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</u> .	제4조(위촉기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20일 이내</u> ----- ----- -----.

<p>제7조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 ① (생략)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갈음한다.</p>	<p>제7조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 ① (생략) ② 「지방공기업법」----- ----- ----- 「지방공기업법」----- -----.</p>
<p>제8조(검사협조)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검사협조) ----- ----- -----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-----.</p>
<p>제9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84조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일비의 계산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.</p>	<p>제11조(일비의 계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검사기간 중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3조(지급기준)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를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.</p>	<p>제13조(지급기준) ----- 「사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-----.</p>

관 계 법 령 발 취

<지방자치법>

- 제134조 (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지방자치법시행령>

- 제83조 (감사위원의 선임)**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84조 (결산 검사 사항)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세입·세출의 결산
2. 계속비·명시이월비(明示移越費)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
3. 채권 및 채무의 결산
4. 재산 및 기금의 결산
5. 금고의 결산

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